

## 65세 노인 기준 연령, 점진적으로 올려야

 이 태 석 |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

1889년 독일 연금 도입과 1925년 영국 노령연금 도입 때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설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인 연령은 65세가 통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자와 관련한 재정 부담이 지속적 증가했음에도 고령자 생활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고령자 건강과 근로 능력 개선에 따라 실효적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추세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130년 이상 통용되어 온 65세 노인연령 기준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재정 자원 문제가 심각한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독일은 65세 11개월, 영국·아일랜드는 66세, 스페인 66세 2개월, 네덜란드 66세 7개월, 미국·이탈리아·그리스·아이슬란드 등은 67세로 상향 조정했고, 추가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국의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지속 가능하고 충분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사업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급여 충분성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성장 둔화에 따라 제한된 자원 내에서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이 좀 더 열악한 고령자에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구조를 차치하더라도 노인복지사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빠른 노인복지사업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40% 내외의 노인이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의 급격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 이상에 대해 노인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 빈곤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기보다 복지 충분성 문제로 해석된다. 노후 소득이 불충분한 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가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해 주요국 중 가장 생산적인 인구 구조를 보이나 앞으로 40년간 노인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해 가장 높은 피부양 인구 부담을 가질 것이다. 건강 개선으로 근로 능력이 향상됐음에도 현재 노인연령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할 경우, 향후 노인 인구 급증은 제한된 예산 한도에서 일인당 지원 금액을 더욱 낮출 것이다.

물론 노인 복지 예산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나 예산 확대는 조세 부담 증가를 의미하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비중 축소와 절대적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인당 조세 부담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기에 현실적인 자원 확대 규모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장기 세입 증가 둔화 문제와 노인 복지 지원 불충분성 문제에 대응하려면 건강 개선에 따른 고령층 근로 능력 향상을 고려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확충과 피부양 고령 인구 축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인 연령은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상한이며, 피부양 고령 인구의 연령 하한을 동시에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연령 이상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 능력과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이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가 발견된다.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하여 좀 더 취약한 정책 대상에 집중해 좀 더 충분한 정책 지원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높아진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통한 조세 기반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변화에 맞춰 1세 단위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연령 조정은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조정이 동반될 필요가 있기에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고, 이를 통해 구체적 조정 방안을 마련한 이후 초기 고령층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위한 충분한 조정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자구적 노력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 정책 목표와 비용 구조를 고려해 사업별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책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중앙일보 오피니언 기고\_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

국토교통부

###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30~50% 할인
  - \*\*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
-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 ('17년) 966억, ('18년) 974억, ('19년) 1,060억, ('20년) 1,074억, ('21년) 1,125억
  -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 ('17년) 2억, ('18년) 26억, ('19년) 80억, ('20년) 129억, ('21년) 219억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 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10월 18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
  - 금번 조치는 지난 10.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18일부터 시행된다.
  -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C 로 제한
  -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

경기·세종 권역	서울·인천·강원 권역	경상·제주 권역	충청·전라 권역
09:00 ~ 09:30	09:30 ~ 10:00	16:00 ~ 16:30	16:30 ~ 17:00

- \* (경상)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충청)대전·충북·충남 (전라)광주·전북·전남
-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 \*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 임산부, 장애인 등은 대상 제외
- (경관조명 소등)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 (실내조명 소등)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김 현 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1. 지방시대위원회의 배경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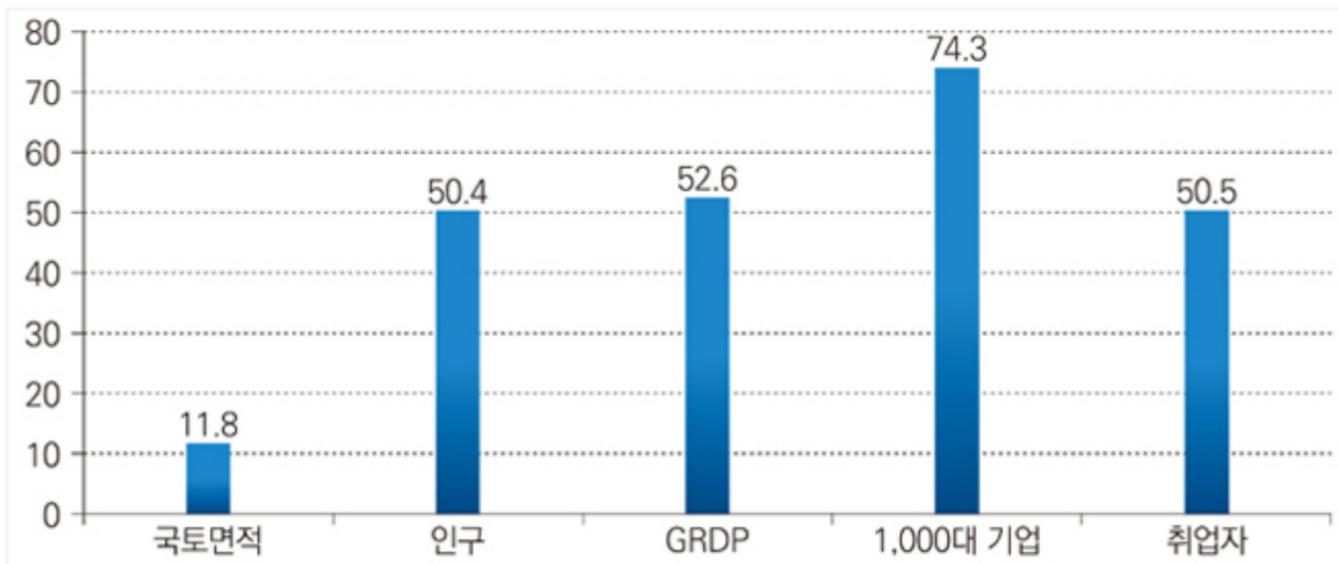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
  - 기존의 공정하지도 기회의 균등도 확보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방식의 추진으로 수도권 집중을 유발했다는 문제점을 제기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대신, "공간적 정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에 의한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 창출을 제시
    - 22.4.27 '지역발전균형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 것을 선언

### • 지방시대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필요성 •

구분	내용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한 정책추진으로 자율적인 지역 혁신창출 미흡</li> <li>•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국가발전 위협</li> </ul>
지방시대 달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2.4.27."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것을 제시</li> <li>• 3대 약속의 하나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창출 제시</li> </ul>
지방시대위원회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통해 국민의 열망이 높은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병행 달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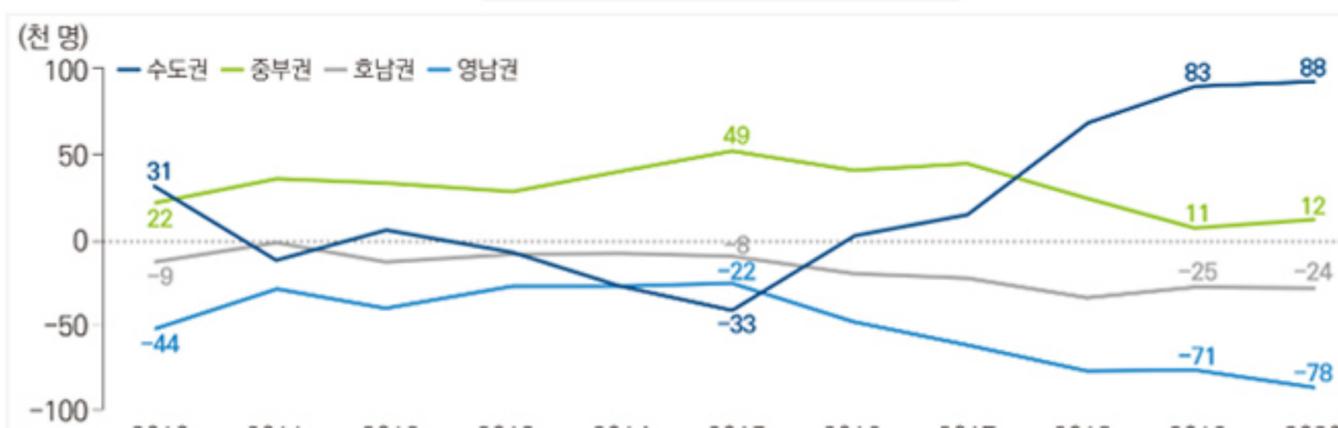
- 지방시대 거버넌스로 "지방시대위원회"형성을 제시한 이유는 "중앙주도의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집중이 결국 수도권 일극 집중"을 초래했다고 판단
  - 2019년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이래 2021년은 50.4%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0대 기업 본사의 74.3%가 수도권에 집중

### • 국가 파국을 위협하는 수도권 집중 •



- 수도권 인구는 2010년대 초반은 다소 감소 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

### • 2010-2020SUS 국내 인구이동 현황 •





- 지방시대위원회는 분권적 기초 아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제 경제 재도약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의미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집중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제시
  - 22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자치분권 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의위원회 설치를 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개념]

분권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가 되는 정책의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02.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및 특징**

- 지방분권은 권력의 소재의 관점,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정도 측면에 초점을 부여
-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동시키는 것과 정부에서 주민으로 권한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윤영근, 2017; 금창호, 2017)
  - 지방분권의 형태는 "강화된 지방자치형, 준영방형, 연방정부형"이 있고, 지방분권은 "기능적분권, 권력적 분권, 연방적 분권"으로 구분도 가능
- 지역균형발전은 총체적 삶의 기회로 파악한 지역발전의 정도나 수준을 지역 간에 비교적 균등하게 하는 것을 의미

• 지방시대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필요성 •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정부에서 주민으로 권한을 이동시키는 것	지역간의 총체적 삶의 기회로 파악한 발전의 정도나 수준을 비교적 균등하게 하는 것

- 정책가치, 정책의 목표, 정책의 성격과 내용, 규범적 논리 등에 따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분권은 민주, 다양화 경쟁에 지역균형발전은 형평 및 국가 통합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의 균등한 기회제공, 및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에, 지역균형발전은 재원의 집권적 배분, 지역간의 격차 완화등에 정책 목적을 두고 있음.
- 지방분권이 전략적,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비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산업의 육성, 특화자원 개발에, 지방분권은 수평적 재정조정, 지역균형발전은 수직적 재정조정이 필요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비교 •

구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념 및 가치	• 민주, 다양화, 경쟁	• 형평, 통합, 통일
정책 목적 및 목표	• 분권형 정치·행정 체제 • 지역발전의 균등한 기회 제공	• 국토의 균형발전 • 집권식 재원의 강제 배분
정책의 성격	• 전략적·상향적 정책 • 수단적 성격 정책 • 재화 생산방법 이양적 성격	• 시간·공간 초월의 상시적 정책 • 최종 목표적 정책 • 재화 이양적 성격
정책의 내용	• 정치·행정 권한 및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 지역경제, 산업의 육성 • 공공시설 분산, 특화자원 개발
정책 수단(재원) 필요성	• 재원의 수요 연차적 처리 가능 • 재정분권 장기과제로 처리 가능	• 정책집행의 초기부터 막대한 재원 필요
규범적 추진 논리	• 지역 의견 반영 가능성 높음 • 수평적 재정 조정 필요	• 지역격차 해소정책으로 중앙정부 의견 반영 가능성 높음 • 수직적 재정 조정

- 그러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보유
- 양자가 의사결정에 대한 고른 참여를 통한 주민의 소외를 방지하고 발전 과실의 고른 분배를 추구

**0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

추진의 관점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진 시기, 상호 영향 등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
- 1)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2)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3) 양자의 선후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존재
- 양자가 비례한다는 관점, 반비례한다는 관점, 무관하다는 관점으로도 파악이 가능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 •

구분	내용	비고
선(先)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혁신은 분권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보다 지방분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li> <li>•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온 원인이 중앙집권의 폐해라는 점, 외발적 균형발전 대신 자발적 지역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지방분권이라는 견해 제시</li> <li>• 지방분권을 시행해서 지역주도 발전을 추구한 다음, 지역불균형이 발생하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사후적으로 추진</li> <li>* 지역균형발전이 오히려 지방분권을 제약한다는 입장도 제시(송상훈, 20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기우(2022); 김순은(2006), 김은경(2008), 금창호(2017), Oates(1993), Canalleta et al.(2004)</li> </ul>
선(先)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추진은 지역간 발전 잠재력의 차이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견해</li> <li>• 분권을 통한 발전의 속도는 지방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불균형발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kata(2004), Silvac(2005), 이승중(2003), 김태영(2003)</li> </ul>
선후관계 특정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는 국가의 소득수준, 정치체제의 발전 정도, 국가 규모 등에 따라 상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driguez-Pose and Bwire(2004)</li> </ul>

-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양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관점이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긴장 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나, 양자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 (김현호, 2017; 이원섭 2018)
- 양자를 비례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상충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 특히, 지역의 자생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권과 자율'이 중요하다는 입장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동시추진 •

관점	내용	비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양자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중앙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비례관계를 고려해서 동시 추진이 중요</li> <li>• 지역여건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li> <li>• 국가의 상황이 지역 불균형 시정의 요구와 지방분권 요구가 동일하게 강한 경우에 적합</li> <li>• 아울러 만약 지역균형발전을 이룬 다음에 분권을 한다고 하면 적절한 균형발전이 달성되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음도 제시</li> <li>*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정책관행의 처방으로써 지방분권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현호 외(2017), 이원섭 외(2018), 김선기 외(2014), 강영주 외(2016), 김순은(2018)</li> </ul>

경험적 관점

- 국가 간의 국가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심화시킨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고 지역불균형발전을 강화시킨다는 연구가 병존(김현호, 2017; Sacchi, 2011)
-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시킨다는 연구가 그렇지 못하다는 연구보다 우위를 차지(10개의 연구 > 7개의 연구)

• 지방분권의 지역 균형발전 영향 연구 •

연구	불균형 측정	영향	대상
Akai & Sakata 2005	Regional disparities	Negative	USA
Calamai 2009	Regional disparities	Negative	Italy
Ezcurra & Pascual 2008	Regional disparities	Negative	EU countries
Gil Canaleta et al. 2004	Regional disparities	Negative	17 OECD
Rodriguez-Pose & Ezcurra 2010	Regional disparities	Negative	19 countries
	Regional disparities	Positive	7 countries
Benet 2006	Regional disparities	Positive	Colombia
Kim et al. 2003	Regional disparities	Positive	Korea
Kanbur & Zhang 2005	Regional disparities	Positive	China
Qiao et al. 2008	Regional disparities	Positive	China
Tsui 1996	Regional disparities	Positive	China

Author et al. year	Regional disparities	Outcome	Number
Tsui 1996	Regional disparities	Positive	China
Rodriguez-Pose & Gill 2004	Regional disparities	Positive	11 countries
Tselios et al. 2011	Overall income	Negative	West Europe
Sepulveda & Martinez-Vasquez 2011	Overall income	Negative	65 countries
Neyapti 2006	Overall income	Positive	54 countries
Morelli & Seaman 2007	Overall income	Positive	UK
Beramendi 2003	Overall income	Positive	15 OECD

#### 0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통합의 방향

##### 요구 충족 및 헌법 가치 실현

- 현재 우리 실정에서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양자의 통합적 추진의 시급성 증가
  - 현재 비등해지고 있는 양자의 요구를 지혜롭게 조화시켜 동시 추진이 최적의 방안임
- 지방분권 측면에서 중앙집권적 정책추진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집권적 폐해를 치유하고 지역 자율적 의사결정과 발전추구에 대한 주민의 요구 충족
    - 지난 정부때 부터 분권형 국가체제로 바뀌어야한다는 "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도 비등

##### [지방분권의 요구]

지금까지 중앙집권형 체제로 인한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  
 권한의 지방이양과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열망 충족을 통해 자율적 발전 도모  
 선진 국가일수록 지방분권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EU, 2009년 연구결과)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지역불균형 발전을 치유해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달성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치 실현
  - 「헌법」 전문, 제120조 2항, 제 122조, 123조 2항 등에서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규정

##### [헌법의 지역균형발전 규정]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하고..."(헌법 전문)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헌법제 120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헌법 제 122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23조 2항)

- 국가적으로 볼 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분권형 국가일수록 지역균형발전의 정도가 높음

구분	분권형 국가	집권형 국가
해당국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한국, 일본, 중국 등
균형발전의 정도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 프랑스의 경우, 집권형 국가체제에서 분권형 국가체제로 전환(2003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의 정도가 높아짐
- 스위스의 경우는 분권의 자율성을 보유한 26개의 칸톤과 광범위한 자율성 가진 2,30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경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이기우, 2017)

프랑스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중앙집권적 정책의 문제점 인식</li> <li>• 1980년대 초부터 법률에 의한 지방분권 추진</li> <li>•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년 헌법 개정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li> <li>• 지방세 비중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개의 칸톤과 2,300여개의 지자체가 경쟁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창출</li> <li>• 칸톤의 경우, 주민수가 1,000여명 정도이지만 주민이 1,3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보다 지역발전의 자율성이 높음</li> <li>• 높은 수준의 지역간 균형발전 달성</li> </ul>

-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개별법에 의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분절되어 있다 보니 거버넌스가 복잡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점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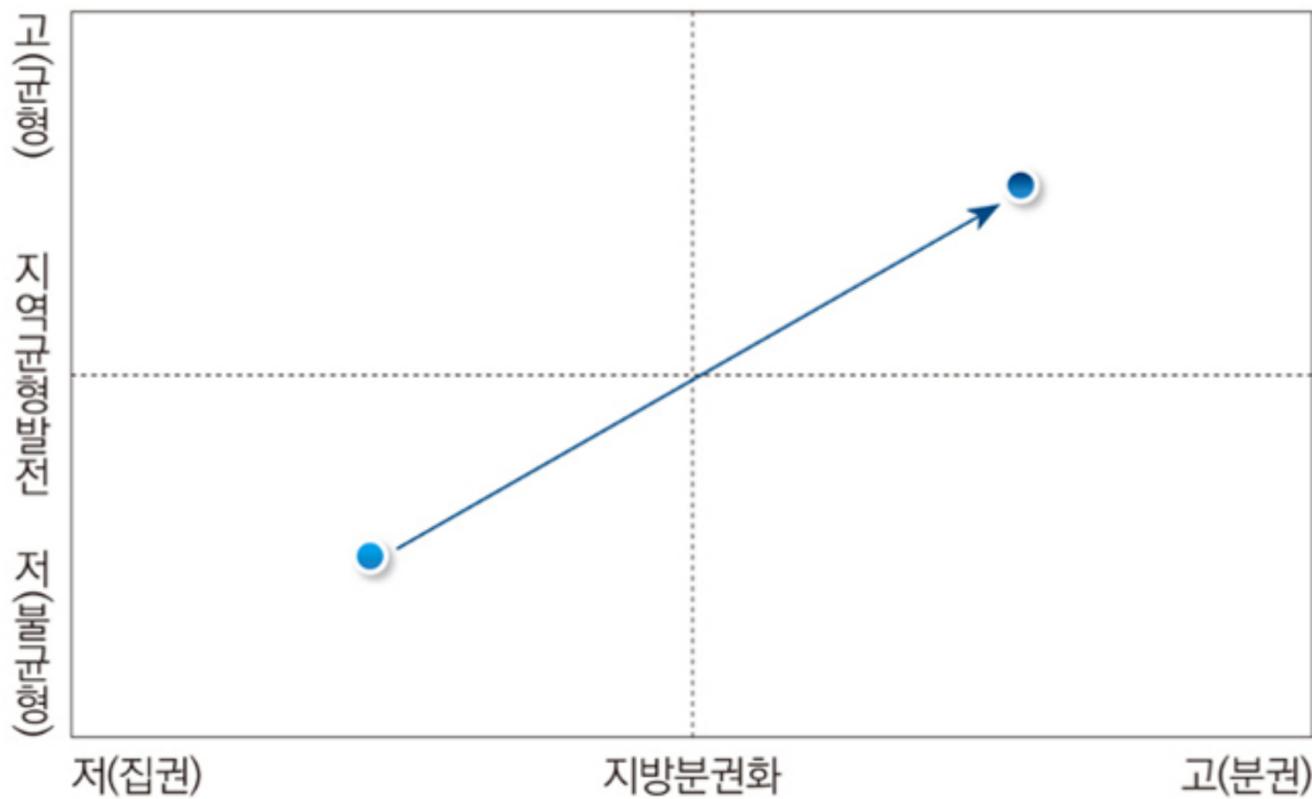
- 거버넌스를 통합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양자의 실행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분절된 거버넌스	통합적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분권위원회</li> <li>• 지역균형발전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시대위원회</li> <li>• 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중심적 거버넌스</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중심적 거버넌스</li> <li>* 지방4단체협의회 등 지자체 참여 강화</li> </ul>

통합의 방향

- 규범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 모형은 高분권 高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현재 低분권(高집권)과 지역불균형발전의 조합에서 高분권(低집권)과 높은 수준의 지역균형발전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

• 이상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 •



- 우리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역사에서 볼 때는 "중앙집권적(중앙주도적) 불균형발전"에서 "지방분권적(지방주도적) 균형발전"으로 이행 하는 것을 의미함
- 중앙집권적 불균형발전의 시기(1960 ~ 1990년)에서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시기(200년대 이후 ~ 현재)를 거쳐 지방분권적 균형발전의 시기(현재부터 향후)로의 이행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역사적 흐름 •



통합의 과제

- 지방시대를 이끌 주체의 지위를 지닌 지방정부의 제반 역량의 강화
  -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방위원회 구축 미치 운영과 동시에 지자체, 지방대학, 지역연구기관, 기업 등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권한과 집행력을 지닌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의 결과 역량의 차이로 인해 지역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를 치유하는 조치시행
  - 국민 통합적 차원에 형평화 재정보조금을 통해 저발전 지역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모델 •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통합된 지방시대 시책을 추진하는 법률 기반 정비 필요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합, 총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통합법 등을 제정
  - 통합 법률에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사업 및 시책, 재원지원, 거버넌스(지방시대위원회)등을 규정
    - 통합형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중앙 보다는 지자체 주도의 체제 구축
-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재원을 편성하고 분권 기초에서 재정을 투자
  - 현재 10조원 정도를 특별회계 50조원 규모 정도로 점진적으로 확대
    - 지방시대 창출 특별회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4개 정부 동안 잘못된 관행(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등에 까지 재원을 지원)에서 벗어나 재원지원 방식의 대폭적 수술 시행
    - 특별회계 외의 국가 재원(22년 경우, 국가 예산 607조 가운데 10조를 뺀 597)에 대한 지방시대 달성 인지적 관점의 재원투자 방식 도입

출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_이상범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국토교통부)

## 알기쉬운 정책용어

**남-북 방향 도로는  
홀수 번호**  
오른쪽으로 갈수록  
도로 숫자가 10씩 커짐  
Ex) 15, 25, 35

**동-서 방향 도로는  
짝수 번호**  
위쪽으로 갈수록  
도로 번호가 10씩 커짐  
Ex) 10, 20, 30

아하!  
서울에서 부산은 남-북 방향이라서  
홀수 번호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구나?

**도로 표지판 모양만 봐도  
도로 종류를 알 수 있어!**

 <p><b>고속도로</b>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p>	 <p><b>일반국도</b>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기간망 도로</p>
 <p><b>특별시도·광역시도</b> 해당 도시의 주요 도로망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p>	 <p><b>지방도</b> 도 또는 지방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p>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국도교통부)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국도교통부)